

# 노르딕(Nordic) 諸國의 特許制度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陸 延 均

〈KORSTIC 特許情報部 次長〉



## Ⅰ 노르딕 特許協定

노르딕 特許協定은 한 나라에서 特許權을 얻게 되면 그 地域內의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는 것과 같은 効力を 賦與받게 되는 廣域特許制度의 한 類型으로서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4國의 노르딕諸國間에 맺어진 특허협정이다.

이 노르딕 4개국은 各國이 獨自의 特許法을 갖고 있었다. 즉 노르웨이는 1885年, 스웨덴은 1819年, 핀란드는 1898年, 덴마크는 1894년에 制定된 各國 獨自의 특허법이 있었다.

그러나 노르딕 4개국에 있어서의 特許法統一運動에 관한 歷史도 各國 特許法의 歷史와 같이 오래되었다. 즉 이 統一特許法 制定의 紀元을 보게 되면 1881年 코펜하겐에서 開催된 노르딕 4개국 法律家會議로부터 비롯된다.

그 후 많은 問題點이 惹起되기는 하였으나 해마다 增加되어가는 特許出願件數와 技術內容의 高度化, 複雜化에 따른 滯貨量의 增大를 避할 길이 없어서 그 對策으로 1967年 11월에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그다음은 그 해 12월에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特許制度上의 差異를 없애고 相互協調로 出願業務의 迅速處理 및 簡素化를 圖謀키위해 各국은 國內法의 改正案을 議決, 1968年 1月 1日부터 各국의 改正된 新法이 施行되어 이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1. 노르딕特許出願制度

노르딕 4國 特許法의 現行法으로의 改正動機는 上述한 바와 같으나 가장 큰 理由로 는 審査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던 舊法을 公開審査制度로 개정함과 동시에 노르딕特許出願制度를 實現시키기 위함이었으며, 그 結果 制定된 現行 各國 特許法에 있어서 특허의 要件, 資源 등 條文의 내용과 順序에 이르기까지 4개국이 거의 同一한 形態를 取한 것이 노르딕 4개국 특허법의 가장 큰 特徵이라 할 수 있다.

노르딕특허출원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노르딕제국 즉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에 同時出願한 것과 같은 法的인 效果를 갖게 된다.

出願人의 自由意思에 따라 노르딕제국 중 任意의 3개국에 출원할 수 있으며, 노르딕 특허출원은 內國出願의 價値를 가짐과 동시에 通常의 내국출원에 適用되는 法規에 따라 審査된다.

그리고 노르딕특허출원은 一般的으로 出願提出國(被出願國)의 言語에 따라 作成되어야 하나, 핀란드國內法으로는 使用言語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① 노르웨이 · 스웨덴 · 덴마크의 3개국간에서는 번역이 要求되지 않는다.

② 핀란드를 包含한 노르딕특허출원이 핀란드 以外の 3개국에서 되었을 경우에는 出願公告 前에 핀란드語로의 번역이 요구된다.

③ 핀란드를 포함한 노르딕 특허출원이 핀란드에서 되었을 경우에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의 2國語에 의한 出願書類가 요구된다.

④ 핀란드에서 부여된 특허에 대하여 明細書, 請求權範圍 등에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와의 不一致가 存在할 때에는 雙方의 原文이 明示하고 있는 것에 限해서만 특허의 보호가 미치며, 출원서류가 스웨덴어를 正文으로 할 때에는 스웨덴어의 원문에 의해 決定된다.

## 2. 發明의 進歩性 및 絶對의 新規性

특허의 요건으로 發明의 내용이 進歩性임과 동시에 絶對의 新規性이어야 한다. 즉 産業上 利用될 수 있는 것으로서 特許出願日 전에 既知의 것과는 本質적으로 相違하여야 하며, 또한 출원일 전에 文書, 講演實施, 그 밖에 公衆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발명이 출원인에 대한 第三者에 의해 濫用되어 公知되었다거나 혹은 公공연하게 인정되는 國際博覽會에 展示되었을 경우에는 出願日 전 6個月 以內的 公表는 新規性を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他國에 同一發明에 대하여 출원하고 있을 경우 출원인은 타국의 特許機關이 그 발명에 대하여 행한 調查結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 3. 出願公開制

特許出願을 하게 되면 出願日(優先日)로부터 18개월을 經過한 출원은 公開된다.

出願인의 청구에 따라 18개월보다 빠르게 공개할 수도 있다. 출원인에 의한 早期公開 請求는 刊行物에 의한 新規性 阻害事由의 早期確保, 출원공개 전의 實施者에 의한 強制 實施權許與의 阻止, 假保護權의 早期取得을 目的으로 함에 있다.

## 4. 物質特許制

노르딕제국의 舊法에서는 化學物質 및 醫藥品の 발명에 대하여는 特定的 製法만을 인

정하고, 그 物品自體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신법에서는 부여키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질특허가 실시됨에 따라 의약 및 飲食物에 대하여도 不特許事由에서 除外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經過規定 및 暫定規定에서 「食品 또는 의약에 관한 物自體의 발명」은 國王 혹은 大統領이 別途로 規定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5. 追加特許制

舊法, 新法 모두 追加特許의 規定이 있으나, 分割出願은 신법에서만 허용한다.

追加特許出願의 發明은 특허출원과의 관계로 볼 때 新規性 喪失의 例外規定이 適用되며, 추가출원의 提出期限은 原特許出願의 공개 전에 하여야 한다.

## 6. 明細書의 記載事項

特許出願時 明細書 등의 기재사항은 當該 技術分野의 技術者가 내용을 읽고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充分하고도 明確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保護範圍를 정하는 1個以上の 請求範圍과 그리고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圖面을 添附하도록 되어 있다.

## 7. 外國人의 待遇 및 優先權

國外에 住所를 갖고 있는 出願人은 代理人을 選任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內國民待遇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리同盟에 의한 優先權과 또한 特許廳이 特別한 事由로 同盟國에서의 출원과 同等히 취급할 것을 결정한 외국출원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인정한다.

## 8. 異議申請과 特許權의 存續期間

出願內容이 方式要件에 만족하고, 특허를 부여하기 위해 缺陷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公衆審査를 위한 機會가 부여되어 公衆閱覽에 提供되며 내용을 告示하게 되는데, 告示日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모든 節次와 審査가 끝나게 되면 特許權이 부여되는데, 특허권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17年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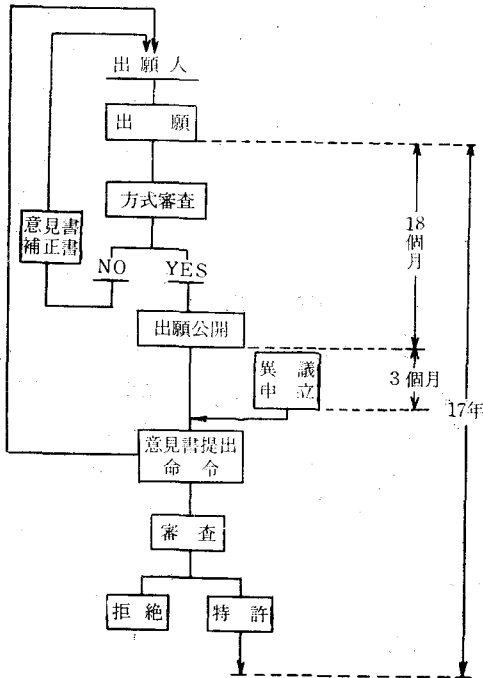
### 9. 強制實施權

權리가 부여된 特許權은 特許附與日로부터 3年, 出願日로부터는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受理되지 않는 한 法第45條의 규정에 의해 強制實施權이 設定된다.

또한 이 강제실시권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도 申請할 수 있다(法 第48條).

그리고 相互主義를 條件으로하여 特定外國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덴마크의 경우로는 다른 노르딕제국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시에 相當하는 것으로 看做된다(法 第45條).

다음의 그림은 노르딕特許協定の 출원에 서 권리를 얻기까지의 過程이다.



② 노르딕諸國의 特許資料

노르웨이 :

- ① Norsk Patent(特許明細書)
- ② Utlegningskrift(公開明細書)
- ③ Norsk Tidende for det Industrielle

Rettsvern (Patenter)(特許公報)

④ Norsk Tidende for det Industrielle Rettsvern (Varemerker)(商標公報)

⑤ register over Norske Patenter (特許索引)

⑥ Registrerte Veremerker(商標索引)

⑦ Klassen og Underklasser (特許分類表)

스웨덴 :

① Baskrivning(特許發明 明細書)

② Svensk Tidskrift för Industriellt Rättsskydd(工業所有權公報)

③ Svensk Patenttidning (Swedish Patent Gazette)(特許公報)

④ Registreringstidning för Vavumärken(商標公報)

⑤ Register Till Patent(特許索引)

⑥ Registreringstidning för varumärken (Namnforteckning)(商標索引)

⑦ Patentklassen Och deras Indelning Subklasser(特許分類表)

⑧ Hanvisningsregister Till Patentklassen (特許分類索引)

핀란드 :

① Patent Och Register Styrelsen (特許發明 明細書)

② Patenttidning(特許公報)

③ Varumärkestidning(商標公報)

④ Patenttidning (Index)(特許公報索引)

덴마크 :

① Patent Beskrivelse(特許發明 明細書)

② Fremlaeggel Sesskrift(公開明細書)

③ Registreringstidende for vare og Faell-esmaerker(商標公報 및 更新商標公報)

④ Patentidende Register og Bekendtg relser(特許索引)

⑤ Registreringstidende for vare og Faell-esmarker (Naveregister)(商標索引)